

國際聯合과 韓國問題

—蘇聯 및 共產諸國의 主張을 中心으로—

崔鍾起*

目 次	
I. 序 論	IV. 韓國問題에 관한 論爭의 推移
II. 韓國問題의 國際聯合 移管의 背景	V. 結 語
III. 韓國動亂과 國際聯合	

I. 序 論

韓國의 獨立問題는 1943年 第2次 世界大戰중 「카이로」(Cairo)會議에서 公式的으로 發表되었다.⁽¹⁾ 그 후 1945年 7월의 「포스담宣言」(The Potsdam Proclamation Defining Terms for Japan's Surrender)에서 이 問題를 再確認하였다. 蘇聯도 1945年 8月 8일의 對日宣戰布告에서 同宣言에 同意하였다. 美·蘇兩國은 日本軍의 武裝解除를 위하여 韓國의 北緯 38度線을 中心으로 以北은 蘇聯軍이 그 以南은 美軍이 占領하기에 이르렀다.⁽²⁾

1945年 1月「모스크바」에서 開催된 美·英·蘇 3國外相會議는 韓國에 對한 5年以內의 期間에서의 信託統治協定交步에 關한 勸告案을 提出, 美·蘇兩側駐屯軍代表에 의한 美·蘇共同委員會를 設置하여 韓國問題에 과해 審議를 하는 것에 合意하였다.

美·蘇兩國은 1946年 3月初 共同委員會를 設置하여 韓國問題에 대한 審議를 하는데 合意하였다. 그러나 美·蘇共同委員會에서는 하등의 合意에도 이르지 못하고 1946年 5月 8日 休會하고 了았다.⁽³⁾

*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教授, 社團法人 韓國國際關係研究所 理事長。

- (1) Redvers Opie and Associates, *The Search for Peace Settlements*, The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1951, pp. 40-41, 302.
Even man's United Nations, Sixth edition, New York, 1959, p. 115.
崔鍾起, 現代國際聯合論, (서울:博英社, 1983), 381面.
- (2) Sigrid Arne, *United Nations Prima*, Prinehart and Co., Inc., New York, 1959, p. 136, 165-196.
Ruhl, Bartlett, *The Records of American Diplomacy*, Alfred A. Knopf, New York, 1956, pp. 671-972.
Korean Independence, U.S. Department of States Publication, 2399, 1947, 60pp.
- (3) Opie, *The Search for Peace Settlements*, op. cit., p. 305.

1년이 경과한 후 美國은 外交的인 經路를 통하여 蘇聯에 대하여 재차 韓國問題를 討議할 것을 기의하여 同委員會의 再開에 합의하였다. 1947年 5月 21日 제 2 차 美·蘇共同委員會가 서는 德壽宮에서 개최되었으나 何等의 合意에 이르지 못하고 失敗에 이르렀다. 美國은 韓國問題를 第 2 次 國際聯合總會에 議題로서 上程할 것은 提起하였다.⁽⁴⁾ 蘇聯代表는 美國代表의 主張을 반박하면서 韓國에서의 美·蘇共同委員會가 失敗에 돌아간 것은 美國의 責이라고 指摘하고 美國이 同問題를 總會의 議題로 上程하려는 것은 「모스크바」協定에 違反되는 것이라고 反對하였다.⁽⁵⁾

總會는 1947年 11月 14日 國際聯合韓國臨時委員團을 設置하여, 韓國에서 總選에 의한 政府樹立과 占領軍의 撤收를 決定하였다. 蘇聯·「체코슬로바키아」·白「리시아」 및 「플랜드」代表는 表決에 앞서 同決議案에 參加하지 않을 것을 聲明하였다.⁽⁶⁾

그러나 蘇聯의 否定的 態度로 同臨時委員團이 韓半島의 總選을 監視하기 위해 北韓地域에 들을 갈 수 없게 되었으며, 1948年 5月 10日 南韓에서만의 選舉에 의해, 大韓民國이 樹立되고 北韓은 同年 9月 別途의 選舉로 北韓政權의 樹立을 보았다.

國際聯合 第 3 次 總會는 1948年 12月 12日 總會 決議 195(Ⅲ)를 채택하여, 「韓國臨時委員團의 監視下의 選舉에 의하여 樹立된 大韓民國은 韓半島의 唯一한 合法政府임을 宣言하고, 占領諸國은 가능한 한 早速히 韓國으로 부터 占領軍을撤收시켜야 할 것을 勸告한다」라고 決定하였다.⁽⁷⁾ 蘇聯은 總會에서 「韓國에서의 民主政府 및 獨立을 達成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던 臨時委員團의 解體를 勸告」하는 內容의 決議案을 提出하였으나, 贊成 6, 反對 46으로 否決되었다.⁽⁸⁾

美國은 1949年 1月 1일 正式으로 大韓民國政府를 承認하였으며⁽⁹⁾, 그후 多數國家가 承認하였다. 大韓民國政府는 1949年 1月 19日 國際聯合에 加入을 申請하였으며⁽¹⁰⁾, 同年 4月 3日 安全保障理事會 제423次 會議에서는 中國에 의해 提出된 大韓民國의 國際聯合加入決議案(S/1305)은 蘇聯의 拒否權行使⁽¹¹⁾로 지금까지 加入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同年 10月

(4) *ibid.*, p. 306.

Yearbook of the U.N., 1947-48, p. 81.

Jandernbach and Hogan, *Toward World Order*, McGraw-Hill Book Co., New York, 1962, p. 129.

D.S. Goodspeed, *The Nature and Function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Oxford Univ. Press, New York, 1959, p. 238.

(5) *IBUN*, 1947-48, *ibid.*, pp. 81-82.

(6) *ibid.*, p. 87.

(7) *IBUN*, 1948-1949, p. 288.

(8) *ibid.*, p. 288.

(9) 外部部, 外務行政의 10年, 457面.

(10) 上揭書, 458面.

(11) *Resolutions of the United Nations Organs Relating to Korea, 1947-63*,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Korea, 1963, p. 15.

20日 總會에 는 韓國臨時委員團 계 속 存置에 관한 決議案 제293호(IV)를 採擇하고⁽¹²⁾, 同年 11月 22日 總會에서는 韓國의 國際聯合 加入申請의 再審要請에 관한 決議 제296호(IV-G)를 각각 채택⁽¹³⁾ 바 있었다.⁽¹³⁾

이와같이 國際聯合은 1947년의 第2次 總會 以來, 第3者的 仲介者가 아닌 1方의 當事者로서 韓國問題에 關與하여왔던 것이다. 특히 韓國動亂에서는 蘇·中共등과 對決하는 立場을 취함으로서 韓國問題에 깊숙하게 관련되었다.

1950年 6月 25日 北韓軍의 南侵에 의한 韓國動亂이 勃發하자, 國際聯合 安全保障理事會는 北韓을 「平和·破壞者」로 규정 非難하는 決議를 취하고⁽¹⁴⁾, 同年 6月 27日에는 「武力攻擊擊退」를 위한 對韓國援助의 提供을 各 加盟國에 勸告하는 決議(S/1511)를 採擇하였다.⁽¹⁵⁾ 또한 7月 7日 安全保障理事會는 韓國援助軍을 美軍司令官 統率下의 統一司令部로 統合하여, 이에 國際聯合旗의 使用을 許可하는 決議(S/1588)를 취하였다.⁽¹⁶⁾

이러한 一連의 安全保障理事會 決議는 拒否權을 갖고 있는 蘇聯·中共의 議席을 要求하면서 安全保障理事會의 出席을 拒否하고 있는 狀況을 利用하여 行하여졌다.⁽¹⁷⁾

1950年 10月 7日 第5次 國際聯合 總會 本會議는 國際聯合軍이 北緯 38度線을 넘어서 全韓半島에 걸쳐서 行動하는 것을 許容하고, 國際聯合 韓國委員團 代身에 國際聯合 韓國統一復興委員團(UNCURK)을 韓國에 派遣, 韓國을 援助할 것을 決議하였다.⁽¹⁸⁾ 第5次 國際聯合 總會는 1951年 2月 1日 本會議에서 韓國戰線에 義勇軍을 投入한 中共을 「侵略者」로 彰勅 決議(498(V))를 採擇하고⁽¹⁹⁾, 同年 5月 18일의 決議(500(V))로 北韓과 中共에 대한 經濟封鎖를 할 것⁽²⁰⁾ 모든 加盟國에 勸告하였다.⁽²⁰⁾

그후 韓國의 軍事休戰協定으로, 1954年 4月 26日 개최된 「제네바」會議에서 韓國問題가 論議되었다. 여기서 國際聯合側 諸國은 韓國의 統一을 위한 總選舉의 實施는 어디까지나 國際聯合의 監視下에서 實施되어야 하며, 駐韓國際聯合軍은 統一政府가 樹立될때 까지 撤退하여서는 안된다는 主張인데 비하여, 北韓側은 外國軍隊는 選舉前에 모두 撤退하여야 된다고 主張하면서, 國際聯合 監視下의 總選舉에 反對하였다.⁽²¹⁾

(12) 崔鍾起, 前揭書, 397面.

(13) *Everyone's United Nations*, *op. cit.*, p.112, Goodspeed, *op. cit.*, p.241.

(14) YBUN, 1950, pp.221-222.

(15) *Ibid.*, p.222.

(16) *Everyone's U.N.*, *op. cit.*, p.117.

(17) YBUN, 1950, *op. cit.*, pp.221-222.

(18) *Everyone's U.N.*, *op. cit.*, p.117.

(19) *Ibid.*, p.118.

YBUN, 1951, p.228.

(20) YBUN, 1951, *ibid.*, p.228.

蘇聯과 他 4個國은 投票에 參加하지 않았고, 그것은 安全保障理事會의 所管事項이라고 反對하였다.

(21) 崔鍾起, 前揭書, 409-411.

「제네바」會談에서 韓國問題討議가 실패로 끝났으므로 同問題는 다시 國際聯合에서 다루게 되었다.

1955年의 第10次 總會부터 1970年의 第25次 總會에 이르기 까지 每年 國際聯合 總會서는 韓國問題의 討議는, 美國을 비롯한 西方側諸國이 蘇聯등 共產圈과 一部 新生諸國의 反對를 무릅쓰고, 國際聯合 統一復興委員團의 年次報告를 承認하고, UNCURK의 存續과 國際聯合 軍의 韓國派遣을 承認하는 것이 常例이었다.

1975年 제30次 國際聯合 總會에서는 南·北韓의 相反되는 決議案이 각각 採擇되는 奇現象이 露呈되었다.⁽²²⁾ 그 후 韓國問題는 國際聯合 總會의 議題로서 上程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南·北韓 어느 쪽이든 國際聯合內에서의 支持票를 보다 많이 確保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질 때는 또 다시 上程을 시도하게 될 것이다.

本論文은 國際聯合이 韓國問題를 다룬에 있어, 戰後 東·西間의 冷戰의 遺物로서 國際聯合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가를 檢討하며, 특히 蘇聯등 共產圈代表가 韓國問題의 討議에 어여한 場場에서 臨하고 있는가를 分析하는데 力點을 두고 있다.

本稿은 이러한 맥락에서 強大國間의 國際政治의 級정의 對象으로서 韓國問題가 國際聯合으로 移管된 背景과 國際聯合 總會에서 冷戰의 遺物로서 어떻게 反映되었는가를 分析하고, 韓國問題의 解決方策을 나름대로 模索하고자 하는데 그 主眼點을 두고자 한다.

II. 韓國問題의 國際聯合 移管의 背景

1945年 12月 「모스크바」에서 開催된 美·英·蘇 3個國 外相會談은 후에 中國을 包含하여 全韓國을 대상으로 잠정적인 民主政府樹立을 위한 協定에 합意하였다. 이 會議에서는 韓國에 駐留하고 있는 美·蘇兩軍司令官으로 하여금 美·蘇共同委員會를 設置하여, 韓國에 있는 民主的인 政黨 및 社會團體와 協議를 거쳐 4國政府에 대하여 잠정적인 政府樹立에 관한 것을 고려하도록 決定하였다. 또한 全韓國臨時政府의樹立을 위한 美·英·中·蘇 4個國이 韓國에 대하여 5年 以內의 期間으로 信託統治協定交涉에 관한 勸告案을 채택하였다.⁽²³⁾ 그리하여 分斷된 韓國의 간급한 諸問題解決에 관하여 美·蘇兩側駐屯軍代表가 2週日 以內에 會談하도록 決定하였다.⁽²⁴⁾

즉 「모스크바」會談에서 韓國에 대한 信託統治體制를 통하여 將來 韓國을 統一시킨다는 구체인이 決定되었다.

(22) *Everyone's United Nations*, Ninth edition, 1979, p. 89.

(23) *Everyman's United Nations*, *op. cit.*, p. 115. Opie, *op. cit.*, p. 304.

Gulius W. Pratt, *A History of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Prentice-Hall, Inc., New York, 1955, p. 738.

(24) Opie, *ibid.*, pp. 304-305.

蘇聯側의 자료에 의하면, 「모스크바」會談에서 채택된 韓國에 관한 사항은 많은 중요한 항목에 있어서, 최초의 美國案과는 달리 결정되었다.⁽²⁵⁾ 먼저 美國側은 信託統治體制가樹立될 때 까지 韩國을 統治하기 위한 기구로서 兩國軍司令官들을 우두머리로한 單一 行政府를 設置할 것을 제안하였다. 여기서 韩國人들은 단지 行政官, 고문, 조언자의 資格으로만 참여하게 되어 있었으며, 單一民族政府를 수립한다는 조항은 없었다. 그러나當時 韩國民衆의 공통된 熱望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臨時 朝鮮民主主義政府”를 수립하는 것이 긴급함을 알리고, “가능한 한 속히 장구한 日本의 韩國統治가 가져온 참담한結果를 칭산할 것”을 요구하는 句節을 최종안에 삽입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蘇聯側의 資料가 주장하는데 의하거니와, 美國案은 5年間의 信託統治期間을 10年으로 延長할 수도 있도록 하는 條項을 提案했으나, 蘇聯이 그期間을 5年으로 制限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蘇聯言論들이 이러한 主張들에 대하여, 「딘 애치슨」(Dean Acheson) 國務長官代理는 소위 美國의 原案이라고 불리우는 계획은 일련의 具體的인 提案을 제시한 本格的인 計劃이 아니었다고 言及하였다.⁽²⁶⁾ 그러나 그는 美國이 信託統治期間을 5年間 더 延長할 수 있도록 할 것을 批議한 것에 대해선 이를 시인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期間延長의 可能性을 가진 5年間 信託統治라는 발상은 「루즈벨트」(Franklin Roosevelt)大統領과 國務省의 생각의 반영이였으며, 이것은 또한 信託統治만이 蘇聯의 韩國支配可能性을 견제할 수 있다는 美國의 信念의反映이기도 하였다.⁽²⁷⁾

信託統治計劃의 실시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이 실수는 아무도 그에 대한 韩國人們의 反應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事實이다. 韩國民은 舉族의으로 反託運動을 전개하였다.⁽²⁸⁾

美·蘇共同委員會가 1946年 봄 서울서 開催되었으나, 兩側의 意見一致를 볼 수가 없었다. 당시 美國의 基本政策은 蘇聯이 인정할 수 있는 온건한 政黨을 찾아, 南·北聯立政府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美國은 온건 右派(金奎植派)와 온건 左派(呂運亨派)의 联立을 지지할 意思를 밝혔다.⁽²⁹⁾

이때 蘇聯의 韩半島政策은 北韓에서 蘇聯의統制下에 強力한體制를 갖추려 했으나, 이것이 美·蘇協力體制의 포기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1947年 6月 蘇聯의 態度는 강경자세로 轉變하였다. 이는 「트루먼 독트린」(Truman Doctrine)등 유럽에서 지속되는 冷戰事態를 반영하는 것으로 「크레믈린」은 유럽에서妥協를 거절하면서 韩半島에서만 協力關係

(25) *The Soviet Union and the Korean Questions: Documents*, Washington, D.C., 1950, pp. 9-11. Sun Sung Cho, *Korea in World Politics: 1940-1950*, Univ.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1967, p 104.

(26)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February 3, 1946, p. 155.

(27) Sun Sung Cho, *op. cit.*, p. 104.

(28) 서울신문, 1945年 12月 30日.

(29) Sun Sung Cho, *op. cit.*, p. 131.

係을 유즈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³⁰⁾

1947年 5月부터 열린 第2次 美·蘇共同委員會는 難航을 계속하여, 美國政府는 그것을理由로 하여, 美·蘇共同委員會의 作業을 中斷하고, 「韓國의 獨立」問題로 國際聯合에 提訴할 方針을 세웠다.

즉 美國은 蘇聯의 挑發로 부터 韓半島에서의 赤化를 막고 가장 效果的으로 韓國問題를 처리하는 方法은 國際聯合에 上程하는 것이라고 結論지었다.⁽³¹⁾

美·蘇共同委員會의 완전교착상태는 韓國問題가 兩國占領軍司令部間의 協調에 의해 解決될 수 없으며, 그러한 問題들은 政府級次元에서 다루어져야 할 必要性이 다시 대두되었음을 응변으로 立證하였다. 이와같은 難局을 打開할 길을 모색하려는 希望에서 「로버트」(Lovett) 美國務長官署理는 8月 2日에 蘇聯·英國·中國의 外相들에게 새로운 提案을 담은 서한을 發送하였다. 이 提案은 「모스크바」協約에 關聯된 4大國들이 그 協約을 신속히 실행할 수 있는 方法을 檢討하기 위해 다시 회합하자는 것이었다. 「모스크바」計劃을 대리할 새 提案의 核心은 國際聯合의 指導아래 兩地域에서 總選舉를 실시한다는 構想이었다.⁽³²⁾

美國의 提案에 대하여 英國과 中國은 受諾하였으나, 蘇聯은 이를 拒否하였다. 蘇聯은 그러한 會議는 「모스크바」協約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美國은 共同委員會의 태두리 안에서 이 協約를 實現하기 위해 모든 努力を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聲明을 하였다. 「몰로토프」(Molotov)는 美國에 대하여 現在의 難局은 “우선적으로 共同委員會에서 美國側代表團이 채택한 了場의 結果”라고 말하였다.⁽³³⁾

蘇聯이 拒否함으로써, 4大國의 「워싱턴」會議 제의는 수포로 돌아갔다. 이제 韓國의 統一은 前보나도 더욱 멀어진 것처럼 보였다. 그러므로 美國政府는 1947年 9月에 韓國問題를 國際聯合에 上程시키기로 決定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美國의 戰後 對韓政策의 不幸한 이 야기는 시로운 章으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

그러니 美·蘇共同委員會의 失敗는 별로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었다. 同 共同委員會는一开始就 가능한 目標를 成취하고자 努力했기 때문이었다.⁽³⁴⁾ 美·蘇兩國은 전적으로 상반된 目的을 가지고 있었다. 美國은 統一된 民主國家를 세우기를 원했으나 反面에 蘇聯은 아시아에서 새로운 衛星國家를樹立하기를 热望하였다.

(30) *Id.*, p. 158.

(31) SVNCC 176/30, "United States Policy in Korea", 4 August 1947,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IV, 738, Butterworth to Lovett, "Presentation of Korea Problem to the United Nations," I Oct, 1947, pp. 820-821.

(32) *Korea's Independence*, *op. cit.*, p. 56. Sun Sung Cho, *op. cit.*, pp. 154-155.

(33)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September 28, 1947, p. 623. 몰로토프가 로버트에게 보내 9月 4日자 서신.

(34) Benjamin Weens, "Behind the Korea Election", *Far Eastern Survey*, June 23, 1948, p. 144. 우리는 當時 美·蘇共同委員會의 美國側代表團의 一員이었다.

蘇聯과 直接協商에서 合意를 보는데 失敗한 美國의 立場으로서는 國際聯合만이 韓國再統一을 위한 唯一한 通路라고 생각되었다. 「로버트」의 提案이 「몰로토프」에 의해 拒否되고 나서, 美國務省은 1947年 9月 17日 蘇聯政府에게 兩國協商이 韓國獨立을 진전시키지 못했으며, 蘇聯政府가 「모스크바」協定에 따른 強大國들간의 討論에 同意하지 않으므로⁽³⁵⁾, 모든 問題를 次期 國際聯合 總會에 上程하기로 한 것이라고 聲明하기에 이르렀다.

美國은 三方陣營에 友好的인 韓國政府를 수립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共產主義의 張창을 봉쇄하는데 도움이 되는 政府를 수립할 決心이었다. 어떤 의미에서, 兩側은 自身의 國家利益에 奉仕하는 政府를 수립하기 위해 戰爭했던 것이다. 어느 쪽도 結果的으로는 敵對陣營에 加擔하게 되지도 모르는 統一韓國의 수립을 위한 代價로 韓半島의 반쪽에 대한 支配권을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美國의 政策立案者들이 國際聯合을 通해 統一된 民主的 韩國政府樹立을 진정으로 希望했는지는 一심스럽다. 安全保障理事會에서 蘇聯이 美國의 提議에 대해 拒否權을 行使하리라는 것은 거의 확실시되었기 때문이다.

蘇聯代表는 이미 美國政策에 대해 強力한 反對意思를 表明했었다. 國際聯合 總會의 機能과 權限은 調査, 討論 및 建議에 限定되어 있다.⁽³⁶⁾ 國際聯合 憲章에 의하면, 建議는 그에 反對하는 11員國에게 道德的인 壓力を 行使할 수는 있어도 法的拘束力を 가지는 것은 아니었다.⁽³⁷⁾

結局 美國은 아마도 여태까지 혼자 부담했던 責任의 一部를 國際機構 및 그 會員國들에게 전가시키려고 했을 뿐이었던 것 같다. 그 외에 다른目的이 있었다면, ① 비협조적인 蘇聯의 태度를 극적으로 드러냄으로써, 國際的인 同情을 받으려는 소망, ② 共產主義의 支配에 對抗하 싸우고 있는 南韓 사람들을 道德的으로 支援해야 할 必要性, ③ 蘇聯의 張창을 저지함으로써 極東의 不安定한 劢力均衡을 安定시켜야 할 必要性 등을 들 수 있겠다.⁽³⁸⁾

美國이 國際聯合에 韩國問題을 上程할 때, 결코 統一을 期待하고 한 것은 아니며, 結局에 가서는 南韓에만 獨立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의도된 대로였다. 이는 國際聯合의 權威下에 皇獨政府의樹立이 이루어졌다는 點에서 美軍撤收에 따르는 赤化危險을 최소로 줄이자는 一도로 표현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美·蘇 어느 한쪽이 韩半島 支配가 어렵다면 斷然으로 인한 南·北韓의 모순점을 利用, 對立케 함으로써 美·蘇의正面對決을 피하려는 목적적인 합의 하에 진행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5)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Documents on American Foreign Relations*, New York, 1947, p. 111.

(36) UN 憲章 第10條~17條 參照.

Leland M. Goodrich and Edward Hambro,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Commentary and Documents*, Boston, 1949, pp. 150-198.

(37) Amm, Vandenboch and Willard N. Hogan, *The United Nations*, New York, pp. 111-123.

(38) Sun Sung Cho, *op. cit.*, pp. 157-158.

韓國問題은 美國의 意圖대로 1947年 10月 蘇聯등의 反對에도 불구하고, 國際聯合總會議題로 上呈되어, 總會決議로 「國際聯合韓國臨時委員團」이 결성되어 (決議 112(II)), 同委員團의 代表團이 來韓하여, 北韓의 拒否로 同代表團의 入北이 이루어지지 못하자, 國際聯合은 가능한 地域에서만 總選舉를 실시하도록 決定하였다. ⁽³⁹⁾

南韓이 서의 總選舉實施(1948年 5月 10日)로 大韓民國政府는 1948年 8月 15日 正式樹立을 宣言하게 되었으며, 同年 12月 12日 國際聯合總會에서 「韓國政府만이 韓半島의 唯一合法政府임」을 承認받게 되었다(決議 195(III)). 아울러 北韓에서도 同年 9月 9日 「朝鮮人民共和國」樹立을 宣言함으로써, 韓半島에는 두個의 異質的인 政府가 南·北韓에 각各存在하게 되었다. 이것은 곧 韓半島의 分斷이 美·蘇의 意圖대로 公式化됨을 뜻한다.

換言하면, 韓國問題가 교착상태에 있는 가운데, 美國이 韓國問題를 國際舞臺에 옮려놓은 것은, 美國의 커다란 外交的 勝利였다. 總會는 政治的이고 心理的인 世界輿論을 움직이는 적절한 道具로 利用되었다. 總會의 勸告가 비록 法的拘束力を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蘇聯의 野望을 억제하는데 커다란 壓力を行使하였다.

이렇게 해서 美國의 見解가 國際聯合을 支配했으나, 總會決議를 「보이콧」하는 蘇聯의 態度는, 이 勝利를 공허하게 만들어, 統一되고 獨立된 民主主義國家로서 韓國을 建設하려는 世界機構의 목표는 蘇聯이 國際聯合의 決定의 履行에 協調하기를 拒否하는限, 遼遠한 것이다.

이러한 狀況에서 이 當時 韓國問題를 國際聯合에 회부한 것이 과연 시기 적절한 조치였는지 대수의 심스럽다. 兩國 또는 4個國 수준에서 協商의 餘地가 아직 남아 있거나, 妥協의 方法이 完全히 없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問題를 國際機構에 회부한 것은 시기 상조였다. ⁽⁴⁰⁾

한 비평가가 적절히 지적한대로 “美國에게 약간의 正當性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國際聯合에 뜨거운 감자를 준 것과 같은 것으로, 國際聯合이 감당하기 힘든, 그러면서도 美國自身은 계수 수행해 나갈 의사가 없는, 그런 責任을 國際機構에 떠맡겼다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다” ⁽⁴¹⁾ 이 시기 적절하지 못한 行動으로 사실상 韓國의 兩分된 政府樹立이 加速화되었고, 二리하여 韓國의 分斷은 더욱 永久化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다.

國際聯合監視下의 南韓單獨政府수립에 대한 韓國人の 反應은 양극단으로 나타났다. 한편에서는 이 소식을 환영했는데, 이들은 現實의인 사람들로서, 유례없는 敵對의 양극體制下에서는 民族統一의 希望을 포기했던 것이다. 다른 한쪽에서는 單獨政府樹立은 韓國民의

(39) YBUN, 1947-48, *op. cit.*, p. 88.

Cole, *The Search for Peace*, *op. cit.*, p. 307.

Vandenbosch and Hogan, *Toward World Order*, *op. cit.*, p. 128.

(40) Sun Sung Cho, *op. cit.*, p. 183.

(41) Korea: A Study of U.S. Policy in the United Nations, *op. cit.*, p. 41.

永久分斷을 초래 할 外交的 대실수라고 보았다.

美國務省의 立場에서 보면, 南韓 單獨政府 수립은 國際聯合 總會의 決議를 실행하는 논리적 귀결이었다. 國務省政策立案者들은 이 지겹고도 반갑지 않은 責任이 國際聯合으로 넘어감으로써 약간 안심했던 것 같다. 또 新生共和國이 美國에 友好的인 완충국가이기 때문에 그들의 政策은 成功의 있다고 생각했다. 南韓政府가 蘇聯에 적대적인 한, 極東의 美國 오세지인 日本은 共產主義의 攻擊으로부터 安全하다고 본 것이다. 美國은 아시아本土에 대한 不必要的 介入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때야말로 모든 아시아 問題로부터 물러서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이리하여 南韓政府樹立은 묘하게도 아시아로 부터의 철수와 共產主義의 勢力의 봉쇄라는 일견 모순되게 보이는 美國의 欲求에 의해서 추진되었다.⁽⁴²⁾

III. 韓國動亂과 國際聯合

1950年 6月 25日 韓半島에서는 韓國動亂이 勃發하였다. 國際聯合事務總長은 美國 및 韓國委員團으로부터 韓國事態에 관한 報告를 받았다. 安全保障理事會는 同日 發表한 韩國事態에 관해 深의한 結果, 北韓을 「平和의 破壞者」로 非難하는 決議(S/1501)⁽⁴³⁾를 行하고, 6月 27日에는 「武力攻擊擊退」를 위한 對韓援助의 提供을 國際聯合加盟各國에 勸告하는 決議(S/1511)⁽⁴⁴⁾를 採擇하였으며, 연이어 7月 7日에는 對韓援助軍을 美軍司令官 統率下의 統一司令部로 統合하여, 이에 聯際聯合旗의 使用을 許可하는 決議(S/1588)를 行하였다.⁽⁴⁵⁾

또한 同年 7月 31日 同理事會는 韓國民間人救護와 支援에 관한 決議(S/1657)를 채택하였다.⁽⁴⁶⁾

이러한 一連의 安全保障理事會의 決議는 拒否權을 갖고 있는 蘇聯이 中華人民共和國의 議席을 要挟하여 安全保障理事會에의 出席을 拒否하고 있는 상황을 利用하여 行하여 질 수 있었다.

1950年 8月 1日字로 蘇聯代表가 安全保障理事會에 復歸하므로서, 安全保障理事會에서는 韓國動亂에 관한 追加 決議案은 채택될 수가 없게 되었다.

1950年 1月 7日 第5次 國際聯合 總會本會議는 駐韓國際聯合軍이 北韓 38度線을 넘어서 全韓半島에 이르러 行動할 것을 許容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國際聯合韓國委員團 대신에 國際聯合韓國統一復興委員團(UNCURK)를 韓國에 派遣하여, 韓國을 援助할 것을 決議하였

(42) Sun Young Cho, *op. cit.*, p. 183.

(43) *Ever man's United Nations*, *op. cit.*, p. 116.

(44) *YBL N*, 1950, *op. cit.*, pp. 230-236.

(45) *Ever man's U.N.*, *op. cit.*, p. 117.

(46) 安全保障理事會 제479次 會議에서 佛·놀웨이 및 英國의 共同提案을 賛成 9, 反對 0, 棄權 1로 채택.

崔鍾圭, 現代國際聯合論, 前揭書, 399面.

다.⁽⁴⁷⁾ 同委員團은 濟洲·「칠리」·和蘭·「파키스탄」·比律賓·泰國 및 土耳其 등 7個國으로 구성되었다. 總會는 또 1950年 12月 1일 韓國을 위한 國際聯合韓國再建團(UNKRA) 設置에 관한 決議 제 410(V)을 채택하였다.⁽⁴⁸⁾

第5次 國際聯合 總會는 1951年 2月 1日 本會議에서 韓國戰에 義勇軍을 投入한 中華人民共和國政府를 「侵略者」로 規定하는 決議 제 498호(V)를 채택하였다.⁽⁴⁹⁾ 同年 5月 18일의 決議 제 510호(V)로서 中共과 北韓에 대한 經濟封鎖를 모든 加盟國에 嘆告하는 決定을 내리었다.⁽⁵⁰⁾

韓國動亂은 1953年 7月 27日 國際聯合側을 代表한 「해리슨」(William K. Harrison) 中將과 北韓側 + 中共義勇軍을 代表한 南日大將간에 休戰協定이 調印되어⁽⁵¹⁾, 休戰狀態는 現在 까지도 계약되고 있다.

韓國軍事休戰協定은 協定發效후 3個月 以內에 關係各國의 高位政治會議를 열어 「모든 外國軍隊의 韓國撤退 및 韓國問題의 平和的解決 등의 問題」를 協議할 것을 定하고 있다(60項). 1953年 8月 23日 國際聯合 總會는 韓國休戰協定은 제 60項의 履行을 위한 韓國問題의 政治會談에 관한 決議 제 711호(VI)를 1953年 8月 28日 채택하였다.⁽⁵²⁾ 政治會談의豫備會談은 1953年 10月부터 北韓 및 中共側과 國際聯合軍側사이에 열리었으나, 意見의 一致를 보지 못하고 同年末 決裂하였다.⁽⁵³⁾

1954年 3月 23日 「베르лин」會議에서 英·美·佛·蘇 4個國 外相은 同年 4月 26日부터 韓國問題를 討議하기 위하여 「제네바」會談을 개최할 것에 合意하였다. 同會談參加國으로는 韓國動亂에 參戰한 諸國과 蘇聯을 포함할 것을 決議하였다.

「제네바」會議에서는 國際聯合側 諸國은 韓國의 統一을 위한 總選舉의 實施는 어디까지나

(47) 崔鍾起, 上揭書, 399面.

1950年 10月 7日 第5次 總會 제 294次 本會議에서 全加盟國 60個國中, 賛成 47, 反對 5, 棄權 7, 缺席 1로 可決됨.

(48) *Everyman's U.N.*, *op. cit.*, pp. 121-123.

YB UN, 1950, *op. cit.*, pp. 280-283.

(49) 鄭亨編著, 유엔과 韓國問題, 前揭書, 117-119面.

Lie, *In the Cause of Peace*, *op. cit.*, pp. 273-274, 350-359.

Godfrich, *The United Nations*, *op. cit.*, pp. 99-102.

Roslyn Higgins, *United Nations Peacekeeping, 1946-1967: Documents and Commentary*, 2, London, 1970, pp. 167-168.

(50) Higgins, *ibid.*, p. 169.

YB UN, 1951, *op. cit.*, p. 228.

(51) *Everyman's U.N.*, *op. cit.*, pp. 121-123.

(52) Higgins, *op. cit.*, pp. 171-172.

(53) Godspeed, *op. cit.*, p. 255.

Everyman's U.N., *op. cit.*, p. 120.

YE UN, 1953, *op. cit.*, p. 131.

崔鍾起, 現代國際聯合論, 前揭書, 408面.

(54) Godspeed, *ibid.*, p. 255.

國際聯合監視下에 實施되어야 한다는 것과 駐韓國際聯合軍은 統一政府가 樹立될 때까지는 撤退하여서는 안된다고 主張하였다. 이에 대해 北韓側은 外國軍隊는 總選舉前에 모두撤退되어야 한다는 것을 主張, 國際聯合 監視下의 選舉에 反對하였다.⁽⁵⁵⁾

1954年 6月 15日 國際聯合參戰 16個國과 大韓民國은 共同聲明을 發表⁽⁵⁶⁾, 韓國問題의 解決은 어디까지나 國際聯合의 테두리內에서 할 意思를 明白히 하였다. 第 9次 國際聯合 總會는 同年 12月 12日 「제네바」會議에 관한 國際聯合側의 報告를 承認하였다.⁽⁵⁷⁾ 同決議는 「제네바」會談에서 韓國問題解決에 대한 合意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주목하고, ① 韓國問題의 政治會談에 관한 報告를 承認하며, ② 國際聯合의 目的이 平和的 方法에 의한 代議制政府形態下で 統一되고 獨立된 民主韓國의 樹立과 당해 地域에서의 國際平和와 安全의 完全回復에 있음을 재확인하고, ③ 이 目的을 위한 進展이 가능한 것임을 멀지 않아 보여줄 것이라는 希望을 表明하고, ④ 事務總長에게 本項目을 國際聯合 제10차 總會臨時議題에 삽입시킬 것을 요청한다고 決議하였다.

「제네바」16個國 共同宣言에서 제시된 2개의 基本原則은 韓國問題에 관한 國際聯合의 原則으로 確立되었고, 1955年 이래 每年 總會에서 再確認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IV. 韓國問題에 관한 論爭의 推移

自由中國은 1955年 12月 8日 安全保障理事會에서 「韓國의 國際聯合加入 促進에 관한 決議案」을 提出하였으나, 제704차 會議에서 蘇聯의 拒否權行使로 좌절되었다.

1955年의 제10次 國際聯合 總會에서 1970년의 제25次 總會에 이를때 까지 每年的 國際聯合 總會에서 韓國問題討議는 美國을 비롯한 西方側 諸國이 蘇聯等 社會主義 諸國과 一部新生諸國의 反對를 무릅쓰고 國際聯合韓國統一復興委員團(UNCURK)의 年次報告를 承認하고, 「언카크」(UNCURK)의 存續과 註韓國際聯合軍의 韓國派遣을 認定하는 것이 通例이었다.例外로서는 1960년의 제15次 總會와 1964년의 제19次 總會에서는 韓國問題討議가 行하여지지 않았다.

1961年의 제16次 總會 以來, 國際聯合 總會에 있어서 韓國問題討議에서 西方側의 支持로 인해, 韓國代表가 「옵씨버」로서 參加가 認定되게 되었다. 北韓代表의 招請에 대하여는 「韓國問題에 관한 國際聯合의 權威와 權能을 明確히 受諾한다」는 條件附 同時招請案(A/C, I/L

(55) 崔鍾起, 前揭書, 409-411面.

(56) Goo speed, *op. cit.*, p. 255.

(57) 鄭一亨編著, 前揭書, 105面.

YBUN, 1954, *op. cit.*, p. 35.

崔鍾起, 前揭書, 411面.

837)이 제기되었다.⁽⁵⁸⁾ 北韓外相은 電文을 보내어 「條件附로 초청한다는 것은 國際聯合 憲章原則에 속 배되는 不合理한 처사로, 北韓當局은 항상 國際聯合을 支持하였으며, 韓國國民의 權利인 韓國問題 討議에 代表를 參席시키기 위하여 派遣을 바라고 있다」⁽⁵⁹⁾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北韓當局의 主張은 總會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1961年 4月 21日 韓國外務部長官 鄭一亨博士는 大韓民國의 國際聯合 加入申請書를 재차 事務總長에게 提出하였다.⁽⁶⁰⁾ 同年 12月 7日 蒙古人民共和國은 第1委員會서 「南韓으로 부터 外國軍撤收에 관한 決議案(A/C, I/L 302)을 제출하였으나, 12月 20日 蒙古는 同提案을撤收하⁹, 으며⁽⁶¹⁾, 蘇聯도 同年 12月 7日 第1委員會에서 韓國問題는 國內問題이므로 이에 관여한다는 것은 憲章 精神에 違反되는 것이라고 指摘한 다음 「언커크」解體決議案(A/C, I/L 303)을 提出하였으나, 12月 20日 蘇聯도 同提案을 차진 撤回하였다.⁽⁶²⁾

1962年 國際聯合 제17次 總會에서의 韓國問題는 두가지 관점에서 審議되었다. 그 하나는 「언커크」의 年次報告에 관한 것과, 둘째는 南韓으로부터 外國軍撤收에 관한 問題였다. 이 두가지 問題는 別途議題로서 제출되었으나, 總會에서 한 議題인 韓國問題(the Korean Questions)로 포함되고, 第1委員會에서 1962年 12月 11일부터 同月 18일까지 檢討되었다. 北韓當局은 1962年 7月 2日, 7月 11日, 11月 28일과 12月 2일 차로 覺書를 國際聯合事務總長에게 보냈고, 大韓民國도 同年 11月 20일과 11月 21일字로 각각 覺書와 關係文書를 제출하였다.

北韓當局은 同覺書에서 「美軍에 의한 南韓占領은 韓國國民의 모든 不幸의 근원이 되며, 그와 같은 占領이 계속되는 한, 韓國에서의 平和的인 統一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北韓當局은 同覺書에서 「韓國의 統一은 國內的인 문제이므로 韓國國民이 外部의 壓力 없이 스스로 解決할 문제이며, 南·北韓에서 民主的인 總選舉에 의하여 해결해야 된다」고 언급하면서, 「[타일 國際聯合] 憲章에 의거한 使命을 완수하려면, 美國으로 하여금 國際聯合軍을 南韓으로부터 즉각撤收시키게 하는 동시에 「언커크」를 해체시켜야 한다」⁽⁶³⁾고 강조하였다.

大韓民國은 同覺書에서 北韓當局과는 반대로 「韓國에 관한 國際聯合의 모든 決議를 수락하며, 韓國에 주둔하고 있는 國際聯合軍은 韓國의 獨立과 統一을 성취할 때까지 주둔토록 國際聯合에 의하여 承認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駐韓國際聯合軍은 韓國에서의 새로운 共產侵略의 威脅에 대한 防衛에 임하는 것으로 國際聯合의 目的이達成될 때 까지, 계속 駐屯

(58) *United Nations Review*, Vol. 8, No. 5, May 1961, pp. 169-170.
YBU N, 1960, *op. cit.*, p. 169.

(59) *UNI*, *ibid.*, pp. 169-170.

(60) 鄭一亨, 前揭書, 156-161面.

(61) *UBU N*, 1961, *op. cit.*, p. 133, 136.

(62) *YBU N*, 1961, *op. cit.*, pp. 135-136.

(63) *Ibid.* pp. 118-119.

하여야 할 것」⁽⁶⁴⁾이라고 강조하였다.

1962年 12月 12日 第1委員會에서 韓國問題에 관한 2개의 決議案에 대한 審議에 착수하였다. 그 하나는 西方側의 15個國 共同提案이고 또 하나는 蘇聯提案이었다.

西方側의 15個國 共同提案은, 總會가 ① 韓國에서의 國際聯合의 目的을 再確認하고, 代議政府形態下에 統一·獨立된 民主韓國을 平和的 手段에 의하여 建設함으로써 國際平和와 安全을 회복하며, ② 總會에 의하여 여러 차례 확인된 國際聯合의 확립된 目的을 北韓當局이 수립할 것과, ③ 이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속 努力할 것을 요청하며, ④ 總會의 決議에 의거한 「언커크」의 活動을 계속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⁶⁵⁾

蘇聯提案은 總會가 ① 韓國領土로 부터 外國軍隊를 철수시키기 위하여 南韓에 軍隊를 주둔시키고 있는 國家에 대하여 軍隊를 철수시킬 것을 요청하고, ② 南·北韓의 經濟·文化的인 發展을 도모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努力を 大韓民國과 「朝鮮人民共和國」에 요청한다는 것이다. 蘇聯代表는 「美軍이 1953年の 休戰協定을 違反하고 南韓에 戰略基地를 설치하여 아시아의 社會主義國家에 대한 戰線의 교두부를 만들고 있다」고 非難하고, 또한 「韓國의 統一은 韓國國民들의 國內問題이며, 外部의 干涉 없이 解決되어야 할 問題이고, 「언커크」의 年次報告는 과거 韓國의 美國干涉을 正當화하기 위하여 作成된 것으로, 「언커크」를 構成하고 있는 代表중 6名은 北大西洋同盟條約機構(NATO) 및 東南亞條約機構(SEATO)에 加入하고 있는 國家의 代表들」이라고 강조하고 「15個國 共同提案은 韓國統一에 대하여 하등의 결실을 가져오지 못할 것」⁽⁶⁶⁾이라고 비난하였다.

1962年 12月 18日 第1委員會에서는 15個國 共同提案을 賛成 65, 反對 11, 棄權 12로 채택하였으나, 蘇聯代表는 蘇聯提案에 대한 表決을 總會本會議에 요청하지 않았다.⁽⁶⁷⁾ 總會本會議에서는 第1委員會서 채택된 15個 共同決議案(A/5, 385)은 同年 12月 18日 總會에서 賛成 63, 反對 11, 棄權 26으로, 決議 1, 855(XVII)로 가결하였다.⁽⁶⁸⁾

1961年 제16次 國際聯合 總會以來, 韓國問題討議에서는 西方諸國의 支持에 의해, 韓國代表만이 「옴씨버」로서 參加를 認定받게 되고, 北韓代表의 招請에 대하여서는 「韓國問題에 관한 國際聯合의 權威와 權能을 明確히 受諾한다」는 條件이 붙여져 있다. 北韓은 이러한 條件附招請案의 受諾을 拒否하였는데, 이것은 北韓代表의 參席을 事實上 拒否하는 것이였다.

美國과 西方諸國의 提案에 대한 支持率은 1959年 以前에는 70「퍼센트」를 上廻하는 것이

(64) *Ibid*, p. 100.

(65) *Ibid*, pp. 20-121.

(66) *Ibid*, p. 121.

(67) *Ibid*, pp. 122-123.

蘇聯 提案은 第1委員會서 賛成 29, 反對 59, 棄權 14로 否決됨. 總會에서는 表決직전에 提案國이 회화하였다.

(68) *Ibid*, pp. 123-124.

였으나, 60年代에 들어와서 계속低下, 50「퍼센트」정도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리자西方側은 韓國問題의 國際聯合 自動上程方式을 裁量上程方式으로 전환시키게 되었다 1968年の 제23次 國際聯合 總會는 韓國代表 單獨招請案은 126個 會員國중 67對 28, 棄權 18로 통과시킨 다음, 北韓挑發行爲에 대한 警告와 裁量上程方式을 내용으로 하는 統韓決議案(제2,466호 (XXIV))을 12月 20日 71對 25, 棄權 20으로 채택하였다. ⁽⁶⁹⁾

裁量上程方式으로의 戰略轉換은 韓國問題의 판에 박힌 年例的 討議에서 오는 會員國들의 倦怠症을 해소하고, 일부 中立國의 統一論을 봉쇄하고 共產側이 國際聯合을 政治的 宣傳舞臺로 이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대신 우리나라와 西方側이 伸縮性 있는 戰略的 立場에서 國際聯合에 의 모든 共產側의 策動에 機動性 있게 대처하려는 필요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다시 말하여 1960年代 중반부터 國際聯合 會員國중 亞·阿 新生國들이 다수 加入됨으로써, 美國이 總會의 多數支持勢力を 확보할 수 없는 것도 그原因의 하나이기도 하다.

從來 韓國問題는 제5차 總會決議 제375호(V)에 의거하여, 「언카크」의 年次報告書가 總會에 제출되면, 議事規則 제13조 B 항에 따라 定期總會 假議題로 포함되어 每年 自動的인 上程·討議가 거듭되어 왔던 것이다. 새로 채택된 裁量上程方式은 「언카크」로 하여금, 그 報告書를 必要에 따라 事務總長 또는 總會에 제출하면 韓國問題가 自動上程되나, 總會 대신 事務總長을 통하여 會員國에 배부도록 하면, 上程討議를 안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이 方式의 特色은 ① 年例討議가 없더라도 國際聯合의 韓國問題에 관한 모든 決議는 계속 유효하여, 「언카크」의 계속 活動이나 駐韓國際聯合軍의 계속 주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② 共產側이 「언카크」解體案 또는 外軍撤收案을 제출할 경우 우리는 이를 자주적으로 융통성 있게 봉쇄할 수 있다는 것, ③ 「언카크」가 수시로 報告할 길이 마련됨으로써 北韓의 挑發行爲는 國際聯合를 통해 全世界에 날날이 폭로되어 國際輿論의 壓力を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1969年の 제24차 國際聯合 總會에서 共產側은 변함없이 外軍撤收案과 「언카크」解體案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韓國問題 討議와 票對決이 불가피하였으나 西方側이 효율적으로 대처한 結果, 同年 10月 30日 政治委員會에서 大韓民國 單獨招請案이 총 126個國중 65對 31, 棄權 26으로 가결되었으며, 共產側의 南·北韓同時招請案은 40對 55, 棄權 27로 否決되었다. 그리고 11月 17日 政治委員會에서의 實質問題 表決에 있어서도 西方側의 統韓決議案이 7對 29, 棄權 22로 가결된 반면, 共產側의 外軍撤收案은 29對 61, 棄權 32로, 「언카크」解體案은 30對 65, 棄權 27로 각각 부결되고, 西方側 決議案은 11月 25日 總會本會議에서 71對 26, 棄權 21로 통과되었다. ⁽⁷⁰⁾

1970年代에 들어와서 國際情勢가 급변하고 1971年 中華人民共和國이 國際聯合의 議席을

(69) 外交部, 「韓國外交 30年: 1948-1978年」, 1979, 195面.

(70) 崔鐘起, 前揭書, 422-423面.

차지한 후 國際聯合 内部의 움직임도 달라집에 따라, 國際聯合에 대한 外交戰略을 근본적 으로 再檢討·再定立하게 되었다.

당시의 國際聯合내의 勢力分布狀況을 보면, 美國과 유대가 진밀한 會員國數가 차지하는 比率이 減少되고 蘇聯에 추종하는 共產系 會員國의 比率도 줄어드는 추세인데 반하여, 非同盟 中立國이 차지하는 比率은 1950~1960年代의 20「퍼센트」선에서 1970年代에는 40「퍼센트」선을 넘어서고 있다. 1970年代초에는 國際聯合의 會員國의 普偏性 原則 아래 分斷國 同時加入論이 고조되고 있다.

1971年의 제26次 國際聯合 總會에서 韓國支持國은 同年 9月부터 시작한 南·北韓赤十字社의 接觸。外部의 論議가 惡影響을 미칠 수 있다는 理由에서 韓國問題討議의 一年間 延期를 제안, 이것을 관철시키었다.⁽⁷¹⁾

다음해인 1972年의 제27차 國際聯合 總會에서 北韓을 支持하는 29個國은 「언커크」의 活動停止와 駐韓 國際聯合軍解體를 포함하는 決議案을 제출, 駁斥적인 攻勢에 나섰다. 韓國支持國은 또 다시 韓國問題討議의 1年間 延期動議를 가결시키았다.⁽⁷²⁾

北韓은 1973年 5月 世界保健機構(WHO)에 加入하게 됨을 기회로 同年 7月 「뉴욕」에 國際聯合常駐「옴씨비」代表부를 설치한 후, 同年 제28차 總會에 國際聯合 史上 처음으로 韓國問題討議에 참가할 수 있었으며, 中共·「알제리아」·「유고」등의 同調勢力에 편승하여, 그들의 宿愿인 共產側 決議案을 통과시키려고 온갖 策動을 다하였다.

韓國政府는 1973年 6月 23일 '6·23 平和統一外交政策'을 宣言함으로써 對 國際聯合政策에도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 同 宣言에서 北韓의 國際機構參與와 統一時까지의 잠정적인 조치로서 南·北韓의 同時 國際聯合加入에 反對하지 않겠다고 밝히었으며, 北韓은 이른바 '祖國統一 5大綱領'⁽⁷³⁾에 입각한 政策으로 國際聯合을 통한 外交政略이相互 격돌하였다.

제28次 國際聯合 總會(1973年)에서는 「알제리아」(Algeria)外 共產諸國은 ① 「언커크」解體, ② 駐韓 國際聯合軍旗 使用의 無效, ③ 駐韓 國際聯合軍司令부의 解體를 骨子로 하는 決議案을 提出하고, 駐韓外國軍의 撤退는 韓國統一을 위하는 것⁽⁷⁴⁾이라고 強調하였다. 처음 國際聯合 總會에 參席하여 發言한 北韓의 李鍾玉은 ① 韓國問題를 國際聯合에 갖어온 것은 憲案 第107條의 違反이며, 憲案 第2條 7項의 違反(國內事項)이라고 指摘하고⁽⁷⁵⁾, ② 聯邦

(71) 外務省, 「韓國外交의 30년」, 前揭書, 197-198面。

(72) 上揭書, 198面。

(73) 北韓: 故 朴正熙大統領이 1973年 6月 23일 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을 發表하자, 當日 下午 同 5大綱領을 發表하고, 韓國側提案을 拒否하였다. 北韓側 5大綱領은 ① 南·北韓의 軍事的 對峙狀態의 解消와 南韓에서의 美軍撤收, ② 南·北韓間의 政·軍·外交·經濟·文化의 각 분야의 合作·交流實現, ③ 南·北間의 '大民族會議'의 召集, 統一問題를 協議, ④ '大民族會議'의 召集과 南·北聯邦制의 實施, 國號는 '高麗聯邦共和國'으로 한다. ⑤ 國際聯合에 南·北 각각 加入하여는 안된다. '高麗聯邦共和國'의 國號로 하나의 國家로서 들어간다.

(74) *General Assembly Documents*, 1973, p.158.

(75) *Ibid.*, p.207.

制와 ③ 「언커크」는 外部勢力의 침습을 위한 道具로서⁽⁷⁶⁾ 國際聯合의 名義下의 外國軍의 解體와 外國軍의 駐屯은 永久分斷의 固定化이고⁽⁷⁷⁾, 韓國에 있는 外國軍은 美軍이 다⁽⁷⁸⁾라고 비난하였다.

中共代表 黃華는 ① 北韓代表의 參加를 歡迎하고, ② 金日成이 主張한 原則을 支持하면서, (i) 美軍의 撤退, (ii) 聯邦共和國制, ③ 「언커크」는 不法이며, 外部勢力의 道具로서, 國際聯合軍의 名義는 侵略의 道具라고 指摘하고, ① 「언커크」의 解體, ② 駐韓國際聯合軍의 解體, 外國軍의 撤退, ③ 外部의 侵略과 干涉을 排除하고, 韓國의 統一은 韓國人自身들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⁷⁹⁾고 指摘하였다.

「불가리아」(Bulgaria)는 ① 北韓의 「옴씨버」參加를 환영하면서, 外國軍의 撤退, ② 北韓의 緊張緩和政策을 支持한다⁽⁸⁰⁾고 밝히고, 「폴란드」(Poland)는 ① 外國軍駐屯을 끝내게 하고, ② 國際聯合軍의 解體, ③ 不法한 國際聯合旗의 使用을 禁止⁽⁸¹⁾하여야 된다고 強調하였다.

蘇聯代表 「마리크」(Malik)는 ① 北韓代表의 參加를 歡迎하고, ② 「언커크」의 存在價值가 없다는 것을 認識하고, 解體하여야 되며, 그것은 外國干涉의 手段⁽⁸²⁾이라고 指摘하고, ③ 外國軍이 不法으로 國際聯合旗를 使用하고 있으며⁽⁸³⁾, 따라서 ① 駐韓外國軍은 撤退하여야 되고, ② 南·北韓이 別途로 각각 國際聯合에 加入하는 것은 不要하며, 單一國家로서 加入하여야 된다⁽⁸⁴⁾고 強調하였다.

「체코슬라바키아」(Czechoslovakia) 代表도 ① 「언커크」解體, ② 在韓外國軍의 駐屯을 禁止, ③ 國際聯合軍旗의 使用禁止, ④ 즉시 外國軍의 撤退⁽⁸⁵⁾를 主張하면서, 北韓側主張을 支持하는 發言을 하였다.

「쿠바」(Cuba)도 ① 韓國의 分斷은 北美의 侵略의 結果이고⁽⁸⁶⁾, 國際聯合軍司令부의 解體와 外國軍의 撤退⁽⁸⁷⁾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되풀이 하였다. 「알바니아」는 ① 「언커크」報告은 內政의 干涉이고, ② 美國은 南韓을 植民地의 하나로 넣고 있으며⁽⁸⁸⁾, 그것은 新植民地主義⁽⁸⁹⁾을 發露라고 비난하면서, ③ 「언커크」는 韓國 統一에 不要한 것으로, 不法的으로 만

(76) *Ib d.*, p. 216.

(77) *Ib d.*, p. 217.

(78) *Ib d.*, p. 219.

(79) *Ib d.*, p. 238.

(80) *Ib d.*, p. 257.

(81) *Ib d.*, p. 262.

(82) *Ib d.*, p. 304.

(83) *Ib d.*, p. 307.

(84) *Ib d.*, pp. 328-329.

(85) *Ib d.*, p. 334.

(86) *Ib d.*, p. 335.

(87) *Ib d.*, p. 362.

(88) *Ib d.*, p. 363.

들어진 것으로, 「언커크」는 解體되어야 하며, 두개의 韓國隱謀⁽⁹⁰⁾로서 聯邦制가 妥當하며, 美軍은 南韓에서 撤退하여야 된다⁽⁹¹⁾고 強調하였다. 東獨은 ① 北韓의 參加를 환영하며, ② 南韓은 國際聯合軍旗의 名義下에 外國軍에 의해 占領되어 있고, 國際聯合旗의 不法使用은 禁하여야 하며, 外國軍은 撤退하여야 되고⁽⁹²⁾, 「언커크」는 解體되어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우크라이나」(Ukraina)도 ① 南·北韓代表가 無條件 討議에 參加하여야 되며, ② 「언커크」는 解體하고, ③ 外國의 干涉은 終熄되어야 한다⁽⁹³⁾고 지적하고, 美軍의 南韓駐屯은 緊張을 高潮시키는 것이 되며, 南·北對話를 妨害하는 것으로⁽⁹⁴⁾, ① 「언커크」의 解體, ② 外國軍의 國際聯合旗使用의 禁止, ③ 駐韓外國軍의 撤退로서 平和的 統一에 寄與하게 되는 것이라고 指摘하였다.⁽⁹⁵⁾

「루마니아」(Romania)는 北韓의 5原則을 支持하고, 國際聯合의 國內問題 干涉의 不當性을 지적하고⁽⁹⁶⁾, ① 外國軍의 駐屯의 廢止, ② 國際聯合旗의 使用禁止, ③ 國際聯合軍司令部의 解體⁽⁹⁷⁾를 主張하면서, 國際聯合軍創設은 不法이라고 強調하고, 外國軍撤退는 統一의 先決條件이니, 戰爭의 危機는 外國軍의 撤退에 의하여 減少되는 것으로, 南·北韓同時 國際聯合加入은 分斷을 劃策하는 것으로 反對한다는 立場을 밝히었다.⁽⁹⁸⁾

「유고슬라비아」(Yugoslavia)도 韓國의 獨立과 平和的 統一과 民族統合, 國際聯合加入問題는 韓國人自身의 問題이고⁽⁹⁹⁾, 非同盟會議에서 外國軍撤退問題, 外部勢力의 內政干涉의 폐지, 國際聯合軍의 解體, 「언커크」解體가 決議된 바 있다⁽¹⁰⁰⁾는 것을 상기시키았다. 而 「러시아」(Russia), 蒙古등도 같은 内容의 主張을 되풀이 하였다.⁽¹⁰¹⁾

이와같은 非同盟 및 共產諸國의 主張을 봉쇄하기 위해서, 大韓民國을 支持하는 自由友邦은 ① 「언커크」의 自進解體, ② 駐韓國際聯合軍問題를 安全保障理事會에서 관리 當事國과 協議할 것, ③ 南·北韓 對話의 환영, ④ 南·北韓 同時 國際聯合加入 환영을 骨子로 하는 共同決議案을 提出한데 대해, 北韓側을 支持하는 共產 및 일부 非同盟諸國은 ① 「언커크」의 解體, ② 駐韓外國軍의 國際聯合旗 使用權 철폐, ③ 國際聯合軍司令部의 解體, ④ 駐韓外軍의 전면 撤收를 主張하는 共同決議案을 제출하였다.⁽¹⁰²⁾

(90) *Ibid.*, p. 866.

(91) *Ibid.*, p. 370.

(92) *Ibid.*, p0377.

(93) *Ibid.*, p. 403.

(94) *Ibid.*, p. 406.

(95) *Ibid.*, d. 410.

(96) *Ibid.*, p. 437.

(97) *Ibid.*, p. 437.

(98) *Ibid.*, p. 440.

(99) *Ibid.*, p. 491.

(100) *Ibid.*, p. 494.

(101) *Ibid.*, p. 551, 609.

(102) 崔鍾起, 前揭書, 425面.

韓國政府는 1973年 10月 27日 韓國問題에 관한 覺書에서 休戰履行을 위한 代案이 마련되면 駐韓國際聯合軍司令部의 將來問題가 檢討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으나, 駐韓美軍問題는 韓·美兩國의 主權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國際聯合에서 거론할 性格의 問題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¹⁰³⁾

때 마침 北京에서 「키신저」·周恩來會談이 있었기 때문에 이 問題에 관한 票對決을 유보하¹, 南·北對話를 통한 平和統一의 촉구와 「언커크」의 解體에 관해서는 合意聲明을 발표하는 것으로 타결을 보았다. 이에 따라 「언커크」는 1973年 11月 29日 聲明書를 발표하여 23年²에 걸친 韓國에서의 활동을 종결시키었다. ⁽¹⁰⁴⁾

그 후 1974年 3月 24日 北韓은 美國에 대해 平和協定締結을 제의하고 國際聯合내에서의 僞裝³和攻勢를 격화시키었다. 「알제리아」와 33個國은 韓國問題를 總會議題에 插入할 것을 提議하였다. ⁽¹⁰⁵⁾

中⁴代表는 美國이 提議한 國際聯合軍問題를 安全保障理事會에서의 討議에 넣는 것에는 反對⁵立場을 밝히고 ⁽¹⁰⁶⁾, 「유고슬라비아」는 外國軍의 撤退을 強調하였으며 ⁽¹⁰⁷⁾, 「루마니아」도 國際聯合軍旗下에서의 外國軍駐屯은 內政干涉 ⁽¹⁰⁸⁾이라고 비난하고, 蘇聯代表는 國際聯合은 過去의 잘못을 폐지하고 問題를 直視하라고 強調하였다. ⁽¹⁰⁹⁾ 「알바니아」는 駐韓外國軍과 國際聯合旗使用的 禁止⁽¹¹⁰⁾와 中共代表는 ① 南·北韓의 統一은 外部勢力의 干涉 없이 平和的手段으로 ⁽¹¹¹⁾, 美國등 西方側의 提案에 反對한다고 밝혔다. 「루마니아」, 「헝가리」, 「체코슬라바키아」, 「불가리아」, 蒙古, 「우크라이나」, 「유고」, 「루마니아」등 共產諸國은 北韓의 5原則을 支持하며, ① 南·北韓의 軍縮, 軍備競爭의 止揚 ⁽¹¹³⁾등과 社會主義國家는 美軍의 散退를 促求하는 戰爭과 平和的 統一을 支持한다고 強調하였다. ⁽¹¹⁴⁾

蘇聯代表「마리크」는 ① 北韓의 常駐 「옴씨벼」決定을 褒美하고, ② 外國軍駐屯은 不當하며 ⁽¹⁵⁾, 危險을 招來하는 것으로, ③ 國際聯合旗의 使用과 不法의 國際聯合軍名義使用은 禁止되어야 하고, 제28차 總會는 韓國問題를 비로서 能動的 段階로 「언커크」를 解體하였으⁶, 그것은 外部勢力의 韓國問題干渉을 排除하는 것으로, 北韓의 10萬名에 이르는 軍

(103) 外務部, 前揭書, 200面.

(104) *Everymen's United Nations*, *op. cit.*, p. 89.

(105)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Official Documents*, 1974, p. 70.

(106) *Ibid.*, p. 70.

(107) *Ibid.*, p. 73.

(108) *Ibid.*, p. 74.

(109) *Ibid.*, p. 76.

(110) *Ibid.*, p. 210.

(111) *Ibid.*, p. 294.

(112) *Ibid.*, p. 301.

(113) *Ibid.*, 487.

(114) *Ibid.*, p. 490.

(115) *Ibid.*, p. 649.

縮을 환영한다. 밝히고, 南·北韓 同時 國際聯合 加入은 反對하며, 美國등 西方側 提案은 分斷을 維持하나; 手段⁽¹¹⁶⁾이라고 비난하였다.

「항가리」代表는 ① 安全保障理事會는 國際聯合軍司令官을 任命한 바도 없으며, ② 國際聯合名義의 軍隊로서 承認하기에는 어렵고, 國際聯合이 國內問題에 干涉하는 것이며, 統一의 妨害가 되는 것이고⁽¹¹⁷⁾, 國際的 緊張要因은 除去되어야 한다고 強調하였다.⁽¹¹⁸⁾ 而 「리시아」는 ① 每年 韓國人の 戰爭을 支持하는 國家數가 增加하는 것은 滿足할 만하며, 「언커크」의 解體는 行國主義勢力의 國內問題干涉의 排除로서 前年度 總會서 採擇된 것이며, ② 駐韓外國軍은 서울 支配를 支持하기 위한 것으로, 緊張의 要因이고, 休戰協定의 違反이며, 平和協定을 체결하여야 된다⁽¹¹⁹⁾고 되풀이 하였다. 蘇聯代表「마리크」는 ① 北韓에는 1名의 外國軍隊도 없으나, 南韓에는 3萬 8,000名이 不法으로 駐屯하고 있다. 그와 같은 것은 2個常任理事國이 不參한 가운데 決定된 安全保障理事會의 不法措置이고, ② 外國軍駐屯은 南·北對話에도 非正常的인 條件을 만드는 것으로 蘇聯은 美國등의 決議案을 反對한다고 밝혔다.⁽¹²⁰⁾ 中共代表 黃華는 ① 國際聯合 安全保障理事會의 決定은 不法이며, 國際聯合司令部는 美侵略의 司令部로서 美國에 責任을 지고 있다.⁽¹²¹⁾ 事務總長은 國際聯合司令部의 報告를 받은 바도 없다⁽¹²²⁾고 지적하고, 國際聯合軍司令部는 解體하고, 國際聯合旗名義의 外國軍은 撤退되어야 할 것⁽¹²³⁾이라고 強調하였다.

西方側 共同決議案은 韓半島의 安保構造를 보전하면서 安全保障理事會 主管下의 關係當事者間 協議를 통하여 韓半島에 보다 확고한 平和體制를 구축할 것과 韓半島의 平和統一을 촉진하기 위하여 南·北對話의 재개를 촉구할 것을 主要內容으로 한 것이었으며, 1974年 12月 9日 政治委員會에서 表決에 붙인 結果 61對 42, 棄權 32로 통과되었다.

共產側 共同決議案은 外勢의 干涉을 排除한다는 명목하에 從前과 같이 全外國軍의 撤收와 國際聯合軍司令部의 解體를 요구한 것이었는데, 이 共同決議案은 같은 날 政治委員會서 48對 48, 棄權 3로 부결되었다. 이어서 12月 17日 本會議에서도 西方側決議案은 61對 43, 棄權 31로 가족되었다.⁽¹²⁴⁾

1975年 제30次 總會는 「알제리아」外 41個國提案이 上程되었다. 蘇聯은 ① 外部의 干涉을 中止하고, ② 外國軍의 撤退, 國際聯合旗名義下의 使用禁止, ③ 平和條約체결을 촉구하

(116) *Ibid.*, p. 560.

(117) *Ibid.*, p. 713.

(118) *Ibid.*, p. 714.

(119) *Ibid.*, p. 318.

(120) *Ibid.*, p. 895.

(121) *Ibid.*, p. 902.

(122) *Ibid.*, p. 903.

(123) *Ibid.*, p. 935.

(124) 外務部, 韓國外交 30年, 前揭書, 200面.

였다.⁽¹²⁵⁾ 東獨은 ① 外部의 干涉 없이, 韓國人 스스로가 解決하여야 된다는 北韓側 主張을 支持하고, ② 國際聯合軍司令부의 解體, 外國軍撤退⁽¹²⁶⁾를 強調하였으며, 「루마니아」, 中共, 「풀가리」, 「알바니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등의 主張도 大同 小異한 것이었다.⁽¹²⁷⁾ 蘇聯代表는 美國側 등 西方提案은 韓半島의 不安定을 維持하는 것⁽¹²⁸⁾이라고 反對理由를 提하였다.

1975年 제30次 總會에서는 韓國問題를 둘러싸고, 自由·共產兩陣營間에 一大 外交戰이 전개되었다. 最終적으로 西方側 修正案은 ① 南·北對話의 계속을促求하고, ② 모든 直接當事者가 休戰協定代案 및 恒久的 平和保障을 지향하는 協商을 개시할 것을 希望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共產側決議案은 國際聯合軍司令부의 無條件解體, 駐韓外國軍의 撤收, 休戰協定의 平和協定으로의 代替, 南·北韓의 동등한 軍備縮小등을 요구하였다.

1975年 11月 7日 政治委員會에서 西方側 決議案(제3390호 A)은 總 142個 會員國中 59對 51, 棄權 29로, 共產側 決議案(제3390호 B)은 51對 38, 棄權 50으로 각각 통과되었고, 總會本會議에서도, 西方側決議案이 59對 51, 棄權 29로, 그리고 共產側決議案이 54對 43, 棄權 42로 각각 통과된 것이다.⁽¹²⁹⁾

이의 같이 兩側案의 相反보는 決議案이 同時に 通過되었다는 것은 國際聯合이 韓國問題에 관할 한 能力의 限界에 도달하였음을 증명하였으며, 그후 韓半島 平和 및 統一問題는 國際聯合을 통해서가 아니라, 南·北韓間의 直接 對話나 모든 當事者間의 協商을 통해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北韓의 主張이 反映되어, 共產側은 韓·美兩國軍의 北韓威脅主張, 南韓으로 부터의 核武器撤收, 國際聯合軍司令부의 解體, 國際聯合軍旗를 사용하는 모든 外國軍의撤收, 北韓의 對美平和協定締結 등 강격한 内容의 共同決議案을 1976年 8月 16日 제31次 總會案件으로 先制 제출하였다. 이에 對應하여 西方側도 부득이 南·北韓 對話を 통한 南·北韓問題의 解決休戰協定案 마련을 전제로 한 國際聯合軍司令부의 解體 등合理的의이고 온전한 内容의 共同決議案을 8月 20日 總會에 제출하였다. 共產側이 總會 開幕직전 北韓側의 요청에 따斗 同決議案을 철회하자 西方側도 決議案을 철회하여 제31次 總會에서 韓國問題는 討議되 않았다.⁽¹³⁰⁾

그렇게, 共產諸國의 代表는 1976年 부터 總會本會議 基調演說에서 韓國問題에 관한 共產

(125) UNGA. OR, 1975, *op. cit.*, p. 297.

(126) *Ibid.*, p. 306.

(127) *Ibid.*, p. 340.

(128) *Ibid.*, p. 521.

(129) *Everyone's United Nations*, *op. cit.*, p. 89.

(130) 韓國外交 30年, 前揭書, 202面.

側主張을 每年 反풀이 하고 있다. ⁽¹³¹⁾

中共의 基調演說要旨

1976年 : ① 韓國서의 干涉과 侵略은 緊張의 要因으로, 平和的 統一과 獨立을 失敗시키는 要因.

② 國祭聯合軍司令部는 解體, 美軍은 撤退하여야 된다.

③ 韓國의 分斷은 終息되고, 平和的 統一은 實現되어야 한다.

1977年 : ① 韓國民의 正義의 關爭을 支持.

② 國祭聯合軍은 解體.

③ 美軍과 그 裝備는 撤退, 朴政權의 彈壓 中止.

④ 韓國民自身에 의한 問題의 解決.

⑤ 30次 總會의 決議를 忠實히 實行하도록.

1978年 : ① 美軍의 撤退, 國際聯合軍司令部의 解體.

② 朴政權과 美國은 두개의 韓國企圖의 活動을 中止.

③ 北韓의 主張을 支持.

④ 30次 總會서의 決議, 早速한 履行促求.

⑤ 韓國問題은 外部의 干涉 없이, 韓國人民에 의한 決定.

1979年 : ① 韓半島의 平和統一은 極東아시아서 重要.

② 두개의 韓國案 反對.

③ 30次 總會決議를 忠實히 履行.

④ 統一의 討議는 南·北韓의 對話를 통해 韓國人 自身의 問題, 外國의 干涉 없이.

⑤ 北韓의 5大原則을 支持.

1980年 : ① 南韓의 軍事政權은 パシスト獨裁.

② 國祭聯合軍司令部, 美軍의 撤退.

③ 休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代替위한 當事國의 交涉.

1981年 : ① 美國은 軍隊의 撤退를 하지 않고 있다.

② 聯邦制

③ 48個國의 決議案支持.

베트남(Vietnam)

1977年 : 즉시 外國軍의 撤退, 軍事裝備를 南韓으로 부터 撤收.

1978年 : 北韓의 3大原則과 5大綱領 支持.

1979年 : 外國軍의 撤退.

1980年 : 美軍의 撤退.

(131) UN. G.A. O.R. 1976年부터 1982年 資料중 筆者가 추린 것임.

1981年：北韓과의 連帶性，外部의 干涉없는 平和的 統一。

알바니아

1976年：① 韓半島의 緊張과 平和에 대한 威脅은 美 侵略的 政策에 의함.

② 美軍은 撤退，國際聯合軍司令부의 解體.

③ 外部의 干涉없는 韓國民의 統一。

1977年：① 美國의 侵略政策.

② 帝國主義者의 駐韓外國軍.

③ 韓國民의 戰爭을 支持.

1978年：① 美軍의 撤退.

1979年：① 韓國民 自身의 統一努力 支持.

② 外部의 干涉없이.

1980年：南韓서의 軍事的 占領을 終熄시킴.

1981年：南韓서 美侵略軍을 追放.

1982年：美軍駐屯이 緊張을 高潮，美軍 撤退.

불가리아

1976年：① 北韓의 外部勢力 排除에 의한 平和的 統一主張을 支持.

② 國際聯合軍과 外國軍撤退는 有利한 條件을 만듬.

1977年：外國軍의 撤退와 外部의 干涉없이.

1980年：北韓의 主張 支持，平和的統一.

1981年：北韓主張은 平和的 解決方法.

1982年：北韓의 平和的・民主統一案 支持.

白俄罗斯：

1976年：① 外國軍撤退.

② 平和的 統一

③ 30次 總會 決議의 履行.

1977年：外國軍撤退.

1978年：外國軍撤退의 總會 決議履行.

1979年：外國軍撤退.

1980年：外部干涉없는 平和的・民主的 手段에 의한 北韓의 主張을 支持.

1981年：蘇聯의 相互不可侵條約과 아세아 諸國間，北韓의 主張을 支持.

1982年：外部勢力排除，外國軍撤退.

체코슬로바키아

1976年：① 外國軍의 撤退，冷戰서 解放.

② 總會決議의 履行.

1977年：北韓의 主張，外國軍撤退을 支持.

1978年：總會의 決議，休戰協定을 平和가 持續되도록 北韓의 主張 支持.

1979年：全外國軍의 撤退.

1980年：美軍의 撤退，總會의 決議 履行.

1981年：北韓의 主張은 解決에 有用.

1982年：駐韓美國軍의 撤退.

東 蜀

1976年：① 南韓서 核武器의 撤收.

② 30次 總會의 決議 實行.

③ 軍事基地의 撤去.

1977年：北韓의 主張인 外國軍，軍裝備의 撤去.

1978年：즉 시 駐韓外國軍과 裝備의 撤去.

1980年：北韓의 主張支持，美軍의 撤收，

1981年：外國軍의 撤退.

1982年：美軍의 撤退.

한 가 리

1976年：緊張의 緩和.

1977年：北韓의 主張支持，人權의 侵害.

1978年：北韓의 主張 支持.

1979年：平和統一 위한 北韓主張 支持.

1980年：全外國軍의 撤退，北韓의 主張 支持.

1981年：北韓人民과의 連帶，平和的 統一 支持.

1982年：外部의 干涉排除，民主的 統一，北韓人民의 戰爭을 支持.

萱 랜 드

1976年：外國軍의 撤退，北韓의 統一方案 支持.

1977年：外國軍의 撤退.

1981年：北韓人民과의 連帶.

1982年：北韓의 主張 支持.

루마니아

1976年：休戰을 平和가 지속되도록 代置，北韓의 主張 支持.

1977年：南·北韓의 對立을 除去，北韓의 緊張緩和 主張을 支持.

1978年：外國의 干涉없는 統一.

1979年：外國軍의 撤退.

1980年：30次 總會서의 決議 履行.

1981年：民主聯邦制 支持.

1982年：連帶와 平和的 獨立·統一案을 支持.

우크라이나：

1976年：30次 總會의 決議 履行.

1976年：外國軍의 撤退，外部의 干涉 排除.

1977年：外國軍의 撤退의 履行，外部勢力干涉의 排除.

1979：外國軍의 撤退.

1980年：外國軍의 撤退와 外部干涉排除.

1981年：美軍의 撤退.

1982年：外國軍의 撤退와 平和的 統一主張 支持.

蘇聯

1976年：① 外國軍 撤退가 最終的 解決이 된다.

② 休戰에서 平和가 지속되도록 바꾼다.

1977年：外國軍의 撤退는 오랜 命令.

1980年：① 美國은 30次 總會의 決議를 支持

② 南韓에 「과뢰」政權을 維持，韓國問題는 未解決.

③ 北韓의 主張에 의한 解決.

1981年：北韓에 의한 解決이 適格.

1982年：① 韓半島의 事態가 極東의 緊張을 高潮.

② 外部의 干涉없이 平和的 手段，北韓의 主張을 支持.

유고슬러비아

1976年：① 韓國事態는 緊張이 集中되는 危險한 地帶.

② 外國軍의 撤退.

③ 國聯軍司令部의 解體.

④ 休戰條約 平和協定으로 代替.

⑤ 南·北共同聲明 精神으로.

1977年：① 外國軍의 撤退.

② 外國軍事裝備와 基地의 撤廢.

1978年：外部의 干涉없이，韓國人の 統一과 北韓의 主張 支持.

1979年：北韓의 主張과 非同盟會議의 地位強化와 平和的 獨立의 強化

1980年：外部勢力의 干涉排除，對話의 再開.

1981年：北韓의 主張 支持。

1982年：北韓의 主張은 國際的 支持 받는다。

V. 結語

우리는 解放이라는 感激속에 國際關係에 대한 知識의 不足과 民族指導者들의 國際感覺의 결핍으로, 動動하는 國際情勢속에 民族의 갈길을 善導할 責務를 소홀히 하였고, 冷嚴한 國際政治에 封情으로 모든 것을 評價하려한 오류를 범하여 왔다.

1945年 1月 「모스크바」三相會議의 決議 등에 관하여, 우리 民族이 보다 冷徹하게 臨하였다면, 오늘의 民族分斷의 永久化라는 悲劇을 막을 수 있었는지 모른다.

美・蘇强大國間의 冷戰은 韓半島의 分斷을 둑시적으로 합의한 가운데, 美國은 南韓單獨政府 수립을 위한 選舉, 蘇聯의 北韓의 衛星國化하려는 政策은 오늘날 韓半島의 分斷을 결정적으로 촉진하였으며, 美國은 그의 責任을一部 덜기 위해 韓國問題를 「유엔」이라는 國際機構에 각각하려는 政策이 오늘의 韩半島의 分斷을 加速화시킨 結果를 낳았다는 것을 否認할 수 없는 것이다.

6·25動亂이라는 民族의 悲劇은 國際聯合의 派兵으로 韓國의 危機를 救하였으나, 統一에의 進展은 없었다. 다만 東・西間의 爭點으로서 韩國問題가 「유엔」總會서 每年 年中行事처럼 討議되니, 급기야는 實質的으로 南・北韓에相反되는 決議案까지 通過되는 奇現象을 露呈하였다.

國際聯合 總會에서 議題로 上程된 韩國問題에 관한 蘇聯등 共產諸國의 主張은 1947年以來, 1975年 總會까지 항상 一貫된 것으로 ① 韓國의 統一問題는 國內事項이므로, 「유엔」등 外部勢力이 干涉하여서는 안된다는 것과, ② 韩國動亂에 派遣된 駐韓「유엔」軍에 관하여는 不法的으로 설치된 것으로, 즉각 撤退와 外國軍撤退, 「유엔」旗 使用禁止 등과 같은 「유엔」活動에 對する 否定적인 立場을 견지해오고 있다.

이와 같이 「유엔」內의 議席의 變動은, 多數議席을 確保할 수 있었던 美國等 西方陣營이 劣勢에 몰리게 되자, 더욱 共產側의 主張에 同調하는 國家數가 늘어나게 되자, 韩國問題의 自動上程方式이 裁量上程으로, 다시 不上程의 方針으로 바꾸어지고 있는 것이다.

1976年 以後 韩國問題가 議題로 上程되지 않고 있으나, 蘇聯을 비롯한 共產諸國代表는 每年 總會 政策演說에서 韩國問題에 대한 그들의 主張을 되풀이하여 發言을 하고 있는 것이다.

韓國問題를 解決하는 것은 國際機構가 아니라, 南・北韓 當事者임을 깨닫고 「유엔」總會에 韩國問題을 上程, 支持票를 보다 많이 確保하려는 虛相에서 벗어나, 다시는 民族의 悲劇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유엔」이라는 國際機構에 지나친 期待를 가져서는 안될 것이다. 國際機構는 各國의 外交政策을 개진하고, 自國의 主張을 내세우며, 討論의 廣場으로서의 機能을 갖고 있을 뿐이지, 그 以上的 役割을 期待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韓國問題 表決 結果의 趨勢

總會	年度	案	件	贊	反	棄	不參	加盟國數
2차	1947	韓國總選決議案		43	0	6	8	57
3차	1948	大韓民國政府承認		48	6	1	3	58
4차	1949	韓國問題		48	6	3	2	59
5차	1950	韓國問題		47	5	7	1	60
6차	1952	韓國問題		51	5	2	2	60
7차	1952	韓國問題		54	5	1	0	60
8차	1953	討議方案案		55	0	5	0	60
9차	1954	統韓方案案		50	5	4	1	60
10차	1955	討議方案案		44	0	11	5	60
11차	1957	統韓方案案		57	6	9	6	80
12차	1957	統韓方案案		54	9	16	3	82
13차	1958	統韓決議案		54	9	17	2	82
14차	1959	統韓問題		59	9	17	2	82
15차	1961	條件附同時招請案		59	14	23	3	99
16차	1961	條件附同時招請案		63	18	19	4	104
17차	1962	南韓單獨招請案		71	9	19	11	110
17차	1962	總會全體會議		63	11	26	11	110
18차	1963	南韓單獨招請案		65	11	24	11	111
19차	1964	分擔金關係至休會, 不論議						
20차	1965	韓國單獨招請案(政治委)		62	12	29	14	117
20차	1965	韓國單獨招請案(本會議)		61	13	34	9	117
21차	1966	i) 南·北韓同時招請案(政治委)		34	53	20		122
		ii) 韓國代表단招請, 北韓이 UN權威와 機能受諾時招請(政治委)		63	24	21		122
		iii) 統韓決議, 韓國代表단招請(政治委)		66	19	24		122
		iv) UNCURK解體 및 UN軍撤收(政治委)		21	61	25		122
		本會議西方側決議案		67	19	32		122
22차	1967	韓國單獨招請案						
23차	1968	韓國單獨招請案		67	28	28		126
		裁量上程方式의 統韓決議案		71	25	20		126
24차	1969	韓國單獨招請(政治委)		65	31	26		126
		南北·韓同時招請案(政治委)		40	55	27		126
		西方側統韓案(政治委)		71	29	22		126
		外軍撤收案(政治委)		29	61	32		126
		UNCURK解體案(政治委)		30	65	27		126
		西方側決議案(總會)		70	26	21		126
25차	1970	韓國單獨招請案		63	37	19	8	127
		南·北韓無條件同時招請案		40	54	25	8	127

總會	年	案	件	贊	反	棄	不參	加盟國數
25	19' 0	外軍撤收案(政治委)		32	60	30	5	127
		UNCURK解體案(政治委)		32	64	26	5	127
		統韓決議案		69	30	23	5	127
26차	19' 1	韓國問重討議 1年間延長案(運營委)		13	9	2		25
		i) 駐韓外軍撤收에 관한 討議延期案(總會)		68	28	22	12	130
		ii) UNCURK 解體案, 討議延期案		68	25	22	15	130
27차	19' 2	iii) UNCURK 報告		70	21	23	16	130
		韓國問題討議延期案(運營委)		16	7	1		25
		上同本會議		70	35	21	6	132
28차	19' 3	UNCURK 解體合意聲明書發表	만장일치					
29차	19' 4	南·北對話促求(政治委)		61	42	32	7	138
		全外軍撤收, UN司解體(政治委)		48	48	38	4	138
		西方側決議案(本會議)		61	43	31	3	138
30차	19' 5	西方側決議案(政治委)		59	51	29	3	142
		共產側決議案(政治委)		51	38	50	3	142
		西方側決議案(本會議)		59	51	29	3	143
31차	19' 6	共產側決議案(本會議)		54	43	42	4	143
		共產側韓國問題討議提議並撤回						

[出處：崔鍾起，現代國際聯合論，首爾：博英社，1983，pp. 428-49.]